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68
----------	---------

제안년월일 : 2024년 4월 24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3조의2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서는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매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는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관 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협력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시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도록 권고함(안 제14조).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제1항 중 “3년마다” 를 “매년” 으로 한다.

안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lt;신 설 &gt;</p>	<p>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u>3년마다</u>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 략)</p>	<p>제3조의2(실태조사) ① ----- ----- ----- <u>매년</u> ----- -----.</p> <p>②·③ (개정안과 같음)</p>
<p>&lt;신 설 &gt;</p>	<p>제1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u>구축·운영</u>하여야 한다.</p>	<p>제1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 ----- ----- ----- ----- -----<u>구축·운영하도록</u> 노력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u>서울특별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lt;신 설&gt;</p>	<p>제2조의2(시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u></p> <p>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u>시장</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실태조사) ① <u>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황에 관한 사항</u></p> <p>2. <u>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u></p> <p>3. <u>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u></p> <p>4. <u>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u></p> <p>③ <u>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u></p>

<신 설>

제14조 (생 략)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전통 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